

##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력경쟁채용시험(일반임기제)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선발예정인원 (3개 직위, 총 3명)

임용예정직급	직위코드	인원	근무예정기관	비고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J-1	1명	대변인실	최초임기 : 채용일~'20.12.31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J-2	1명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식품위생주사 (일반임기제)	K	1명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	

※ 하나의 직위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

※ 각 지방식약청의 근무지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식약처 소개-지방식약청 소개 참고

### 2. 주요업무분야

직위코드	임용예정직급	담당예정업무	근무예정기관
J-1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주요정책 홍보 전략 실행·기획 ○ 온라인 이슈 모니터링 및 대응 콘텐츠 기획	대변인실
J-2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식약처 소관 규정 검토 및 제·개정 ○ 식·의약품 위해예방 및 위기관리 제도·규제 개선 등	소비자위해 예방정책과
K	식품위생주사 (일반임기제)	○ 수출국 식품 등 위생관리체계 조사·분석 ○ 수출국 식품 제조업체 위생관리 현황 조사·분석 등	현지실사과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경우 기관 사정에 따라 전보할 수 있음

※ 담당예정업무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 시행규칙상 임용된 부서에 분장된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음

### 3. 응시자격요건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2020.7.6.) 기준

□ 직급별 응시자격요건 : 상세내용은 [붙임] 임용예정직위별 직무기술서 참고

직급	응시자격요건
<p>일반임기제 행정주사(6급) (J-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② 「공무원 임용시행령」 &lt;별표9&gt;의 구분에 따라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③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li> <li>* 관련분야: 광고·홍보, 디지털콘텐츠(영상·이미지) 기획, 카피라이터, 캠페인 기획 등</li> <li>○ [학위]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li> <li>②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③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li> <li>* 관련학과: 신문방송학, 광고홍보학, 언론정보학, 방송영상학 등</li> </ul>
<p>일반임기제 행정주사(6급) (J-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li> <li>○ [경력]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②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③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li> <li>* 관련분야: 법조계 또는 공공기관·기업체 법무부서 근무, 기타 법률 검토·자문 등</li> <li>○ [학위]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li> <li>②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③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li> <li>* 관련학과: 법학 또는 법률 계통 학문</li> </ul>
<p>일반임기제 식품위생주사 (6급) (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로서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숫자에 해당하는 기간(年)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사(축산·식품·수산제조·품질관리·포장), 기사(6, 축산·식품·수산제조·품질경영·포장), 산업기사(9, 축산·식품·품질경영·포장), 위생사(8), 영양사(8)</li> </ul> </li> <li>* 관련분야: 식품 관련 공공기관·기업체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국내외 식품등 위생관리체계 등 조사분석</li> <li>○ [경력]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②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③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li> <li>* 관련분야: 식품 관련 공공기관·기업체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국내외 식품등 위생관리체계 등 조사분석</li> <li>○ [학위]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li> <li>②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③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li> <li>* 관련학과: 식품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영양학, 식품화학 등 식품 계통 학문</li> </ul>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9.4.16.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9.4.17.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19.4.17.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마.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 응시 관련 유의사항

**【 공통 】**

- 임용예정직급별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위 '응시자격요건'에서 각 직급별로 정해져 있는 자격요건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일반임기제 행정주사(J-1) : '경력-①', '경력-②', '경력-③', '학위-①', '학위-②', '학위-③' 중 하나
- 일반임기제 행정주사(J-2) : '자격증', '경력-①', '경력-②', '경력-③', '학위-①', '학위-②', '학위-③' 중 하나
- 일반임기제 식품위생주사(K) : '자격증', '경력-①', '경력-②', '경력-③', '학위-①', '학위-②', '학위-③' 중 하나

※ 응시자격요건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2개 이상 기재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증·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0.7.6.)을 기준으로 판단함
  - ※ 최종(면접)시험일까지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 학위수여예정증명서의 경우 학위수여 여부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응시자격요건 2가지를 모두 갖춘 응시자의 경우라도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며, 특정 응시요건을 선택하여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검토결과 해당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다른 응시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종 부적격 처리됨
- 응시자격요건 이외의 서류전형 평정요소(관련분야 근무 경력, 관련분야 학위 및 자격증, 어학성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등급 취득 여부 등)는 원서접수 최종일(2020. 5. 29.)까지 해당 또는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 응시자격요건 외 서류전형 평정요소는 본 공고문 마지막 부분의 '직무기술서'를 참조

### 【 경력의 범위 】

- 서류전형에서 관련분야 경력은 연차별로 차등 평정되며, 인정 가능한 '경력'은 채용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것만을 의미함
  - 학위취득 기간 중의 대학조교 경력은 불인정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또는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주 근무시간 및 세부적인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별도 첨부
  - 현재 재직 중인 경우 근무종료일은 원서접수 마감일(2020.5.29.)로 작성할 것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과거 근무경력 중 당시 소속기관(기업·단체 등)의 폐쇄(폐업 등)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음 / 둘 중 하나만 제출 시 불인정
    - ※ 서류 확인과정에서 폐쇄(폐업)되지 않은 기관(기업·단체)의 경력에 대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 서류 미제출 또는 세부경력사항 미기재 등의 사유로 해당 경력이 응시관련분야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 학위의 범위 】

- '학위' 요건은 '응시자의 전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직급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와의 적합성을 의미함
  - 응시자격 또는 우대요건으로 '학위'가 명시된 직급에 응시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해당 학위의 전공사항과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함

###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운전면허증, 한자능력, 상담사, 컴퓨터 활용 관련 등)은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제출하지 말아야 함

### 【 우대요건 】

- 서류전형에서 어학성적으로 인정가능한 시험은 'TOEFL(iBT), TOEIC, New TEPS, FLEX, G-TELP'로서, 아래 표의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응시자가 획득한 성적에 따라 차등 평정됨
  -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시험점수를 인정하므로, 인정되는 어학성적을 시험별로 소지한 경우에는 각각의 성적을 모두 제출

어학시험명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
기준점수	71점 이상	530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625점 이상	65점 이상

- 시험 실시일이 2018년 5월 30일 이후인 성적에 한하여 유효하며, 어학성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 '~SPEAKING, ~WRITING' 등 부수적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는 인정되지 않음

## 4.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 5. 시험방법

### 가. 서류전형

- **(방식)** 서류전형 위원이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응시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합격자 결정)**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응시자는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각각 합격자로 결정
  - \* 서류전형기준 :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의 충실성),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근무경력, 응시자격요건 제외한 학위·자격증, 어학성적 등 직렬(직급)별 우대요건 및 가산점[자세한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 실시(온라인)  
· 목적 : 공직가치관 및 위기대응능력 사전 검증  
· 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어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 나. 면접시험

- **(방식)** 면접위원과 서류전형 합격자 간 질의·응답을 통한 종합 평가
  - \* <면접시험 평정기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각각 상·중·하로 평정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
  -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6.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

가. 원서접수 : 2020. 5. 22.(금) 10:00 ~ 5. 29.(금) 16:00 (공고 : '20.5.18.~5.29.)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s://employ.mfds.go.kr>)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수수료(7급이상 : 7,000원) 외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관련 부가 비용 등) 발생
  - 제공된 서식 이외의 증빙자료는 스캔 후 파일로 첨부(업로드)하여야 함
-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 접수기간 중 우수인재채용시스템에 처리단계별로 안내

###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동일인이 복수 또는 중복 지원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수수료 결제 전 단계까지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는 있으나, **응시수수료 결제 이후 및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 시 응시수수료는 환불 처리함
  - 자료 작성 후 원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한 시점이 원서가 접수된 시점이므로 원서접수 마감시간 내에 '결제'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접수 처리되지 않음
- 주말에는 전화 문의가 불가능하고, 접수 마감일에는 응시자가 몰릴 경우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5. 28.(목)까지 결제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20. 6. 25.(목)

-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인사혁신처)에 공지 예정

다. 온라인 인성검사(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 6. 29.(월)

라. 면접시험(예정) : 2020. 7. 6.(월)

- \*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마.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 2020. 7. 24.(금)

-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인사혁신처)에 공지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임용시기는 2020년 8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 7. 제출서류 등(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① 응시원서 :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원서접수를 완료하면 자동 생성

- \* 응시수수료 전자결제(6급 : 7,000원)외 소정의 처리비용 발생
-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방법 : 응시수수료를 먼저 결제하고 추후 관계 기관 조회 또는 증명서 제출을 통하여 반환)

### ② 제출서류 총괄표(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자 필수

- \*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목록(시스템 활용 제출서류는 제외)

### ③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자 필수

-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 중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
- \*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는 반드시 기재

### ④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A4 1매 이내 작성) \* 응시자 필수

-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불필요한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A4 2매 이내 작성) \* 응시자 필수

-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불필요한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⑥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미기재시 경력 불인정), 상근·비상근 여부,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FAX번호)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비상근경력(시간제 경력)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내용 미비,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 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를 별도 첨부(기관 직인 또는 관리자 서명 등 반드시 포함)

### ⑦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 담당 직무와 관련된 자격(면허)증 제출, 담당 직무와 무관한 자료 제출 금지(예: 상담사)

⑧ 학위증명서(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증명서, 석·박사학위증명서)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 석·박사 학위증명서에는 반드시 전공 기재 필요
- \* (국외학위 취득자) 학위증 및 졸업증명서 사본(2개모두) 제출(한글번역본 첨부)
-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학위수여(졸업)예정증명서 제출도 가능하나, 최종시험(면접)일 현재 해당 학위를 소지하여야 함

⑨ 외국어(영어)능력 성적 1부 \* 해당자에 한함

- \* 인정시험: TOEFL(iBT), TOEIC, New TEPS, FLEX, G-TELP
- \* '18년 5월 30일(TEPS는 New TEPS만 가능)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성적이어야 유효함

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1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성적이어야 유효함

⑪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만 제출

- \*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제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⑫ 진위검증 및 부정행위 관련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응시자 필수

- \* 제출자료 진위 검증 및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⑬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시스템 활용) \* 응시자 필수

- \*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동의여부 체크 후 응시원서 접수(별도 파일 제출 불필요)

※ 국외에서 발급된 증빙자료(학위, 논문, 경력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 국외 학위 및 근무(연구)경력의 경우 담당교수 등 학위취득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FAX, 이메일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

## 8. 근무 기간 및 보수 수준

### 가. 근무기간

-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근무시작일 ~ 2020.12.31.)으로 정함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협의 및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나. 보수수준 등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상한액 71,830천원 ~ 하한액 36,190천원
    - \* 상기 연봉액 이외에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 9.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의 판단 및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규정에 의한 시험, 그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에 다른 공무원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제출한 서류 중 원본에 대한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 채용서류(원본) 반환 청구기간(예정) : '20. 7. 27. ~ '20. 8. 26.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이후라 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및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에 따른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예: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 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릅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http://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채용제도 : 운영지원과 인사관리팀 (☎ 043-719-1249, 1243)
- ※ 원서접수, 결제시스템 등 : 우수인재채용시스템 운영팀 (☎ 043-234-3100)

# 붙임 1

##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행정주사(일반임기제) / J-1)

직위코드	임용예정기관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J-1	대변인실	행정6급(일반임기제)	1명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정책 홍보 전략 실행·기획</li> <li>○ 온라인 이슈 모니터링 및 대응 콘텐츠 기획</li> <li>○ 온라인 홍보영상, 이벤트 등 콘텐츠 기획 등</li> </ul>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li> <li>○ (직급별 역량) 긍정적 팔로워십, 문제해결력·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li> <li>○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최신 시사동향에 대한 민감성</li> </ul>
-------	--

필요 지식	○ 정책홍보 및 광고(마케팅) 등 관련 지식
-------	--------------------------

<b>※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b>															
<b>관련분야 : 홍보·기획 등</b>															
<b>응시자격요건 (택1)</b>	<b>경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② 「공무원 임용시행령」 &lt;별표9&gt;의 구분에 따라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③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li> <li>* 관련분야: 광고·홍보, 디지털콘텐츠(영상·이미지) 기획, 카피라이터, 캠페인 기획 등</li> </ul>														
	<b>학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li> <li>②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③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li> <li>* 관련학과: 신문방송학, 광고홍보학, 언론정보학, 방송영상학 등</li> </ul>														
<b>우대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광고·홍보, 디지털콘텐츠(영상·이미지) 기획, 카피라이터, 캠페인 기획 등</li> </ul> </li> <li>○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되지 않은 관련학과 학위(학위별 차등 배점)</li> <li>○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자격증 소지자</li> <li>○ 외국어(영어)성적이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EFL(iBT, PBT), TOEIC, New TEPS, FLEX(영어), G-TELP(Level2) 소지자</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TOEFL(iBT)</th> <th>TOEFL(PBT)</th> <th>TOEIC</th> <th>New TEPS</th> <th>FLEX</th> <th>G-TELP(Level2)</th> </tr> </thead> <tbody> <tr> <td>기준점수</td> <td>71점 이상</td> <td>530점 이상</td> <td>700점 이상</td> <td>340점 이상</td> <td>625점 이상</td> <td>65점 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어(영어) 우수자는 위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성적에 따라 차등 배점('18년 5월 30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성적이어야 유효)</li> <li>*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시험점수에 대해 인정하므로, 인정되는 어학성적을 시험별로 소지한 경우에는 각각의 성적을 모두 제출</li> </ul>	구분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	기준점수	71점 이상	530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625점 이상	65점 이상
구분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									
기준점수	71점 이상	530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625점 이상	65점 이상									
<b>가산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일정 등급을 취득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등급 이상: 서류전형 만점의 5% / 3등급: 서류전형 만점의 3%)</li> </ul> </li> </ul>														

## 붙임 2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행정주사(일반임기제) / J-2)

직위코드	임용예정기관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J-2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행정6급(일반임기제)	1명

<b>주요 업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규정의 검토 및 제·개정</li> <li>○ 식·의약품 관련 위해예방 및 안전관리 제도·규제 개선 등</li> </ul>
--------------	---

<b>필요 역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통역량)</b> 공직윤리(공정성·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사명감), 고객지향(공복의식)</li> <li>○ <b>(직급별 역량)</b> 긍정적 팔로워십, 문제해결력·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li> <li>○ <b>(직렬별 역량)</b> 분석력, 전략적사고력, 창의력 등</li> </ul>
--------------	---

<b>필요 지식</b>	○ 국가기관의 입법실무, 행정절차, 법령해석 등 관련 지식
--------------	----------------------------------

<b>※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b>															
<b>관련분야 : 법무행정</b>															
<b>응시자격요건</b> (택1)	<b>자격증</b>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b>경력</b> ○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법조계 또는 공공기관·기업체 법무부서 근무, 기타 법률 검토·자문 등														
	<b>학위</b> ○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법학 또는 법률 계통 학문														
<b>우대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 단,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은 제외</li> <li>○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되지 않은 관련학과 학위(학위별 차등 배점)</li> <li>○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되지 않은 변호사 자격증</li> <li>○ 외국어(영어)성적이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 : TOEFL(iBT, PBT), TOEIC, New TEPS, FLEX(영어), G-TELP(Level2) 소지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TOEFL(iBT)</th> <th>TOEFL(PBT)</th> <th>TOEIC</th> <th>New TEPS</th> <th>FLEX</th> <th>G-TELP(Level2)</th> </tr> </thead> <tbody> <tr> <td>기준점수</td> <td>71점 이상</td> <td>530점 이상</td> <td>700점 이상</td> <td>340점 이상</td> <td>625점 이상</td> <td>65점 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어(영어) 우수자는 위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성적에 따라 차등 배점('18년 5월 30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성적이어야 유효)</li> <li>*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시험점수에 대해 인정하므로, 인정되는 어학성적을 시험별로 소지한 경우에는 각각의 성적을 모두 제출</li> </ul>	구분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	기준점수	71점 이상	530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625점 이상	65점 이상
구분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									
기준점수	71점 이상	530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625점 이상	65점 이상									
<b>가산요건</b>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일정 등급을 취득한 자 (2등급 이상: 서류전형 만점의 5% / 3등급: 서류전형 만점의 3%)														

### 붙임 3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식품위생주사(일반임기제/ K))

직위코드	임용예정기관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K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	식품위생6급(일반임기제)	1명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국 식품 등 관리체계 조사·분석</li> <li>○ 수출국 식품 제조업체 위생관리 현황 조사·분석 등</li> </ul>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성·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사명감), 고객지향(공복의식)</li> <li>○ (직급별 역량) 긍정적 팔로워십, 문제해결력·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li> <li>○ (직렬별 역량) 전문지식, 분석력, 정보관리능력 등</li> </ul>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등 안전 관련규정 및 기준·규격에 대한 지식</li> <li>○ 식품 등 제조·위생 관련 분야 전문지식</li> </ul>		

응시 자 격 요 건 (택1)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 식품등 안전관리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로서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숫자에 해당하는 기간(年)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기술사(축산·식품·수산제조·품질관리·포장), 기사(6, 축산·식품·수산제조·품질경영·포장), 산업기사(9, 축산·식품·품질경영·포장), 위생사(8), 영양사(8)</li> <li>* 관련분야 : 식품 관련 공공기관·기업체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국내·외 식품 등 위생관리체계 등 조사·분석</li> </ul>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li>①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②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③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관련분야 : 식품 관련 공공기관·기업체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국내·외 식품 등 위생관리체계 등 조사·분석</li> </ul>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li>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li> <li>②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③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관련학과 : 식품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영양학, 식품화학 등 식품 계통 학문</li> </ul>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li> <li>* 단,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은 제외</li> <li>○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학위·자격증(학위별·등급별 차등 배점)</li> <li>* 자격증은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것 중 가장 유리한 1개에 대해 인정하므로, 위 <b>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격증을 모두 제출</b></li> <li>○ 외국어(영어)성적이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li> <li>: TOEFL(iBT, PBT), TOEIC, New TEPS, FLEX(영어), G-TELP(Level2) 소지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TOEFL(iBT)</th> <th>TOEFL(PBT)</th> <th>TOEIC</th> <th>New TEPS</th> <th>FLEX</th> <th>G-TELP(Level2)</th> </tr> <tr> <td>기준점수</td> <td>71점 이상</td> <td>530점 이상</td> <td>700점 이상</td> <td>340점 이상</td> <td>625점 이상</td> <td>65점 이상</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어(영어) 우수자는 위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성적에 따라 차등 배점('18년 5월 30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성적이어야 유효)</li> <li>*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시험점수에 대해 인정하므로, 인정되는 어학성적을 시험별로 소지한 경우에는 각각의 성적을 모두 제출</li> </ul>						구분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	기준점수	71점 이상	530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625점 이상	65점 이상
구분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														
기준점수	71점 이상	530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625점 이상	65점 이상														
가산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일정 등급을 취득한 자</li> <li>(2등급 이상: 서류전형 만점의 5% / 3등급: 서류전형 만점의 3%)</li> </ul>																			

[별지 제1호]

**제출서류 총괄표**

직위코드	응시직급	응시자격요건	성 명	생년월일
(예시) J-1	일반임기제(행정주사)	(예시) 경력	김 O O	0000.00.00

▣ 제출서류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여부
1. 이력서(필수)	
2. 자기소개서(필수)	
3. 직무수행계획서(필수)	
4.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학위(졸업)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외국어(영어)능력 성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해당자에 한함)	
9.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본, 남성만 제출)	
10. 진위검증 및 부정행위 관련 동의서(필수)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여부 란에 “O” 표시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동의서는 원서접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하므로 목록 기재 불요

[별지 제2호]

## 이력서

가. 인적사항							
응시 번호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예시) J-1	응시 자격요건	경력	성명	김 0 0
나. 응시자격 <span style="float: right;">※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span>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는 '다'의 우대요건에 작성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예정)일		자격증 번호		자격 검정기관	
	식품기사	0000.00.00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요약)		
	(주)바른식품	2017.00.00~현재(00월 00일)		과장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 요약 기재		
	국민식품(주)	2015.00.00~2017.00.00(00월 00일)		연구원			
학위	전공	학위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식품공학	0000.00.00				석사	
다. 우대요건 <span style="float: right;">※ 응시자격요건으로 작성한 것 이외의 사항을 작성 후 공란은 삭제</span>							
* 경력은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근무경력 중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만 기재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요약)		
	00식품(주)	2014.00.00~2015.00.00(00월 00일)		과장			
	00식품연구소	2012.00.00~2014.00.00(00월 00일)		연구원			
	00식품(주)	2011.00.00~2012.00.00(00월 00일)		계약직 근로자			
학위	전공	학위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식품공학	0000.00.00				학사	
	생명과학	0000.00.00				석사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예정)일		자격증번호		자격검정기관	
		0000.00.00					
영어 성적	응시일자	시험명		점수		영문성명	
	0000.00.00	TOEIC		500			
국어 능력	응시일자	시험명		점수		자격(수험) 번호	
	0000.00.00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00			
라. 가산요건(한국사능력검정시험성적) <span style="float: right;">※ 해당사항 없을 시 공란 삭제</span>							
한국사	시험일자	회차		등급		인증번호	
	0000.00.00	00		3		00-000000	

\* 기재사항이 많더라도 반드시 1장으로 작성(줄 추가·삭제, 글자크기 조절 등 가능)

##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예정직급의 직위코드 기재
-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 하는 직위코드의 **응시자격요건 중 반드시 택1**
- ④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2020.7.6)]**

###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시) 직위코드 J의 응시자격요건 중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분야에서 9년의 경력이 있을 경우,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5년의 경력은 ‘나.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4년의 경력은 ‘다.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하되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증빙으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별도 첨부
- \* 서류 미제출 또는 세부경력사항 미기재 등의 사유로 해당 경력이 응시분야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①상근, ②비상근, ③시간제로 구분,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시간 표시**
- \* 상근 : 주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40시간 미만 근무자
- 과거 근무경력 중 당시 소속기관(기업·단체 등)의 폐쇄(폐업 등)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음 / 둘 중 하나만 제출 시 불인정
- \* 서류 확인 과정에서 폐쇄(폐업)되지 않은 기관(기업·단체)의 경력에 대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기준일 : 원서접수 최종일(2020.5.29.)**]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하되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증빙으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별도 첨부
- \* 서류 미제출 또는 세부경력사항 미기재 등의 사유로 해당 경력이 응시분야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①상근, ②비상근, ③시간제로 구분,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시간 표시**
- \* 상근 : 주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40시간 미만 근무자

**【학위】 응시자격요건으로 기재한 것을 제외한 관련학과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취득(예정)일·학위종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으로 기재한 것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응시자격요건으로 기재한 것 외의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영어성적】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인정가능한 시험은 영어성적은 ‘TOEFL(iBT), TOEIC, New TEPS, FLEX, G-TELP’
- **2018년 5월 30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 중 각 해당직급의 직무기술서 내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응시자가 획득한 성적에 따라 차등 평정됨
- \*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시험점수를 인정하므로, 인정되는 영어성적을 시험별로 소지한 경우에는 각각의 성적을 모두 제출 가능

⑥ **가산요건(한국사능력검정시험성적)**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시험**이어야 유효함

[별지 제3호]

**자기소개서**

직위코드	(예시) J-1	응시직급	(예시) 행정6급(일반임기제)	응시자격요건	(예시) 경력	성명	김 〇 〇
------	-------------	------	---------------------	--------	------------	----	-------

**<작성요령 - 이하 부분은 확인 후 삭제하고 작성할 것>**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태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출신학교명, 출생지, 부모 등 친인척의 인적사항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 등)을 받을 수 있음
- 글자크기 10pt 이상, A4용지 1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직위코드	(예시) J-1	응시직급	(예시) 행정6급(일반임기제)	응시자격요건	(예시) 경력	성명	김 〇 〇

**<작성요령 - 이하 부분은 확인 후 삭제하고 작성할 것>**

- 특별한 양식 없이 자신의 경험, 기관 및 임용예정직급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전 및 정책 (사업)목표, 추진전략 및 일정, 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술
- 출신학교명, 출생지, 부모 등 친인척의 인적사항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 등)을 받을 수 있음
- 글자크기 10pt 이상, A4용지 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참고-시스템작성양식]

**응시원서 및 응시표**

\* 본 내용은 원서접수시스템에서 원서작성 및 결제를 완료하면 마지막 단계에 자동 생성

**응시원서**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력경쟁채용시험]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직위코드		응시번호	
성명(한글)		성명(한자)	
성명(영문)		생년월일	
주 소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복수국적여부			
응시자격요건			

※ 응시수수료 : 전자결제 납부

**응시표**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성명(한글)		성명(한자)	
2020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당일에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